

映寫室을 兼用하는 學校圖書館運營의 實際

—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李 炳 壽

1. 머 리 말

學校에 있어서 圖書館과 映寫室(視聽覺室)은 따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一般 定規 教室 問題를 解決하기에도 급급한 處地에 그 외의 特別教室을 이것 저것 여러 개 마련한다는 것은 여간 期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各種 特別 教室의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學校 經營者의 苦惱가 있다. 더구나 도서관이나 영사실은 可能限 많은 人員을 收容할 수 있는 面積과 席座數가 必要한 것이니 이 點에서 서로 共通性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解放後 한 동안 各學校마다 講堂에다 暗幕 裝置를 하여 映寫室로 兼用함이 流行되었었다. 그 後 또 數年前부터 新教育思潮와 더불어 映寫室 以上으로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을 認識하게 되어 各學校마다 서로 다투어 校內 圖書館을 마련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런데 學校 圖書館의 建物の 面積과 收容人員에 있어서 先進國家의 法制化된 基準을 보면 學校圖書館은 在籍學生數의 10%(一割)를 收容할 수 있어야 하고, 1人當의 面積은 0.66坪이라고 되어 있다. 이 基準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學生數가 한 1,500名程度 된다고 假定하면 160名을 收容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넓이는 약 100坪

이 있어야 한다는 計算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 現在 우리나라에도 學校 建物を 新築할 경우에는 대개 2層이나 3層쯤에 몇 개 教室을 圖書館으로 割愛하여 設計하고 있는 實情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學校에서는 그와 같은 넓이를 가진 新築圖書館을 마련하기 어려운 形便이므로 臨時 應急 措置로서 從前부터 있던 講堂을 圖書館으로 改造 使用하려는 뜻을 내어보기도 하는 것이다. 本校에서도 從前的 圖書館이 狹少하여 講堂을 圖書館으로 改造하고 여기에서 映寫室까지 兼用하여 運營하게 된 바 約一年 동안에 걸쳐 運營해 본 結果 實際面에서 일어나는 隘路點을 中心으로 다음에 몇가지 問題에 對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2. 本校에서 講堂을 圖書館으로 改造하고 映寫室까지 兼用 運營하게 된 動機 및 經緯

本校에는 일찍이 日帝時代부터 20坪의 閱覽室과 15坪의 書庫를 가진 獨立된 圖書館 建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使用하여 첫 해에는 開架式 그 다음 해에는 半開架式으로 하여 3年間 運營해 왔었다. 그러나 學生들의 讀書熱이 漸次 높아지고 圖書館 利用者數가 늘어남에 따라 이것으로써는 도저히 滿足스러운 運營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편 本校에서는 視聽覺教育面에도 힘

을 기술여 왔으나 映寫室다운 映寫室이 없어 곤란을 느끼고 있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問題를 한꺼번에 解決하기 위한 方案을 研究한 끝에 當時의 講堂이 學生 500名 以上은 收容할 수가 없어 어차피 全校的인 行事는 運動場을 使用하지 않으면 안 되는 實情에 있었으므로 그다지 利用度가 높지 못한 이 講堂을 보다 利用度가 높은 圖書館으로 使用하고 映寫室까지도 兼用하도록 한 것이다.

3. 圖書館과 映寫室을 兼用함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하였던 몇 가지 問題點

- (1) 圖書館施設과 映寫室 施設을 한방에 어떻게 併用할 것인가?
- (2) 圖書 閱覽 方式과 書架 配置를 어떻게 할 것인가?
- (3) 圖書 閱覽 時間과 映畫 上映의 時間 配定을 어떻게 할 것인가?
- (4) 圖書 紛失의 憂慮性이 많은데 이에 대한 對策을 어떻게 講究할 것인가?
- (5) 映寫時의 混雜性과 騷亂性을 어떻게 防止하고, 圖書館 獨特의 靜肅한 雰圍氣를 持續 造成하여 나갈 것인가?
- (6) 講堂을 없인다고 하나 不得已한 學校 또는 外部의 事情으로 因하여 講堂의 目的으로 使用해야 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4. 몇가지 問題點에 대한 對策

- (1) 圖書館에는 먼저 正常的인 圖書館 施設을 하며, 映寫施設로는 各窓門에는 暗幕裝置를 하고 中央에 移動式 映寫施設 裝置를 한다.
- (2) 圖書 閱覽 方式은 難點이 多少있기는 하나 完全 開架式(接架式)으로 하고 書架配置는 한 쪽 壁面만을 利用한다.

(3) 大部分의 時間은 圖書 閱覽 時間으로 提供하고, 映畫 上映을 위하여는 間或 生기는 自習時間과 一週日에 三日間의 점심시간을 配定한다.

(4) 圖書 紛失防止를 위하여 自習室을 移動式 칸막이로써 만들었다가 映畫 上映時에는 自習室을 없이하고 거기에 쓰였던 칸막이를 떼어다가 書架알을 一直線으로 가리우고 書架에는 손이 닿지 않게 한다. 따라서 圖書 閱覽時는 所持品을 保管시키나 映寫時는 이러한 制限을 하지 않는다.

(5) 映畫, 上映時의 混亂하고 騷亂함을 防止하기 위하여 200名 以上은 入場시키지 않고 언제나 靜肅한 雰圍氣가 造成되도록 社會性 指導를 徹底히 한다.

(6) 講堂을 圖書館으로 使用함에 따라 外部의 어떤 機關에서 使用 許可를 申請해오더라도 이를 一切 不許하며, 校內 行事로는 卒業式 其他 萬不得已한 경우에만 限하여 使用한다.

5. 映寫室 兼用的 實際運轉面에서 느낀 長點과 그 隘路點

(1) 長 點

- ① 圖書館教育과 視聽覺 教育이 有機的인 連絡下에 서로 多樣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學生들의 興味를 돌갈수 있다.
 - ② 特別敎室 하나로써 두 가지 目的을 達成할 수 있으니 敎室難을 解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施設 또는 敎室管理面에서 諸般 經費를 節約할 수 있다.
- 가) 專任 職員의 配置가 二重으로 必要 없다.
- 나) 도서 열람용 椅子를 그대로 映畫

鑑賞時에 使用할 수 있다.

④ 室內의 넓이가 比較的 넓기 때문에 映畫 時間에 많은 人員을 한꺼번에 觀覽시킬 수 있다.

(2) 隘路點

① 映寫時間에 自習室 칸막이를 移動하는데 있어서 相當한 時間과 勞力의 浪費를 要하게 된다. (그래서 自習時間에 한 學級만 觀覽시킬 경우에는 칸막이 移動을 안하기로 하였음)

② 圖書 閱覽 時間에는 室內의 靜肅한 雰圍氣가 維持되나 映寫時間에는 室內가 잡잡하므로 生活指導(社會性指導)를 한다고는 하나 힘이 미치지 어렵고 자연 靜肅한 雰圍氣가 破壞되기 쉽다.

③ 圖書의 紛失 防止에도 더욱 많은 神經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④ 映寫室의 機能과 閱覽室의 機能을 同時에 發揮할 수가 없다.

⑤ 讀書에 趣味있는 學生과 映畫에 趣味있는 學生이 서로 一致하지 않으므로 彼此에 不滿을 이야기 하게 된다.

⑥ 學生 自治活動에 있어서 圖書班과 映寫班이 서로 責任을 미루기 쉽고, 따라서 各班의 組織 活動을 弱화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6. 運營經過 및 結言

(1) 元來 先進國의 例로 보아 圖書館資料라 함은 圖書以外的 非圖書資料(non-book material)까지 包含시키는 바 境遇에 따라서는 視聽覺 器具나 資料도 圖書館에서 管掌하고 圖書閱覽室以外에 視聽覺室을 따로 두어 運營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은 本校의 教室事情으로 因하여 이를

따로 둘 수 없는 事情이므로 當分間 試驗的으로 閱覽室과 映寫室을 한방에서 兼用해 보기로 하였던 것인데 前述한 바와 같은 몇 가지의 長點도 있는 反面에 갖가지의 隘路點이 許多하였다.

(2) 따라서 이러한 隘路點을 克服하기 위하여 運營擔當者로서는 그야말로 非常한 努力을 傾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3) 그중 가장 큰 隘路는 室內의 靜肅한 雰圍氣造成이 어렵다는 點이다. 잡잡한 방에서는 자연 指導의 힘이 미치지 어려워 떠돌식 해지기 쉬우며 이것이 全體 雰圍氣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4) 따라서 可及의이면 映寫室은 책상을 그다지 必要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방일지라도 따로 施設을 하고 收容人員이 적은 것은 映寫機를 여러번 돌려서 많은 學生이 順次로 觀覽할 수 있도록 하는 方向으로 運營함이 좋겠으나 萬不得已하여 兼用運營할 경우에는 다음 몇 가지 點에 대하여 特別히 留意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① 室內에서의 讀書 또는 映畫의 內容을 通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知識을 얻게 하는 것이 勿論 重要하다고 하겠지만 이보다 앞서 圖書館 利用法이나 映畫鑑賞을 하는 態度等에 관한 徹底한 生活指導가 先行되어야 한다.

② 圖書 閱覽時에는 勿論이거니와 映寫時에도 立席者가 없도록 定員制(座席制)를 嚴格히 實施함으로써 混雜性和 騷亂性을 事前에 防止하도록 最大限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③ 圖書館의 諸規程이나 遵守 事項을 徹底히 周知시켜 이를 잘 遵守하도록

하는 社會性 指導를 계속 게을리하지 않아야한다.

- ④ 圖書館 運營 擔當者와 映寫室 運營 擔當者 그리고 學生 圖書班과 映寫班의 事務分掌 또는 組織面에 있어서 有機的인 連絡을 가질 수 있도록 配慮함이 있어야 한다.
- ⑤ 講堂을 圖書館으로 使用할 경우에 往往이 보면 아직도 講堂이란 認識이 남아 있어서 外部에서 무슨 講演會場

이니, 大會나, 試驗場이니 하면서 場所를 빌려달라는 交渉이 오는 수가 많다. 이것이 圖書館 擔當者로서 또한 頭痛거리의 하나인 것이니 講堂을 圖書館으로 使用하기로 大勇斷을 내린 學校의 責任者는 正常的인 圖書館 運營을 期하기 위해 모름지기 이를 拒絶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는다.

(筆者 釜山商高校 司書教師)

「연세대학교 도서관학 총서, 14」

목 록 규 칙 (CCR)

—저자와 표제 기입—

Seymour Lubetzky 저

이 재 철 역

155 page, 46倍版

값 350 원